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

■ 구비서류 [모집공고일 2026.05.22(금) 이후 발행분] ※ 인감증명서는 “본인 발급용”, 주민등록등·초본은 “전체포함”, 가족·혼인관계증명서 “상세” 제출 확인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확인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 서류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계약용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
	O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O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“상세”로 발급
	O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O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		O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
		O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 복무기간 확인
		O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		O	전세피해자 확인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
노부모 부양	O		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
	O		주민등록표 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 확인
	O		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
	O		가족관계증명서		•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포함 시 관계 확인
	O		출입국 사실증명서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		O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 등재 확인
		O	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
		O	혼인관계증명서	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O	출입국 사실증명서		•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		O	친양자/입양관계증명서	본인	• '24.06.19.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(출산특례)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)
		O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(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)
		O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• [양식] 접수장소 비치 /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
대리인 추가서류		O	위임장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
		O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	O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대리인 본인 확인
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		해당자	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	해당자	• 무허가 건물확인서 / •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
				해당자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/ • 당첨사실 소명 서류